

2024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

[상담전문요원]

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충북도 내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및 양육상담 등 상담 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2일
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○ 내용

채용 분야	지원자격	고용 형태	주요업무(비고)
상담 전문 요원	▶ 필수사항 :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·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 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▶ 우대사항 ① 차량 소지자로 충북도 내 출장 업무가 가능한 자	계약직 (1명)	-보육교직원 상담 -양육상담 -상담지원관련 행정업무 ※ 심리학 분야 : 심리학, 상담학, 아동복지학
			- 센터에서 요청한 업무

※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채용 확정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우대

2. 전형일정

○ 전형일정

구분	전형일정	비고
채용공고	2024. 03. 22.(금) ~ 2024. 04. 09.(화)	홈페이지 등 공지
응시원서 접수 기간	2024. 04. 01.(월) ~ 2024. 04. 11.(목) 12:00	방문/우편접수/메일 기간접수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04. 11.(목) 14:00 이후	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심사(개별연락)
2차 면접시험	2024. 04. 12.(금) 13:30 ~	대면평가 (면접시간 개별연락)
최종 합격자 발표	2024. 04. 12.(금)	홈페이지 및 개별연락
근무시작예정일	2024. 04. 15.(월) ~	추후 협의 가능

※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접수 자동연장됨

※합격자발표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(<http://chungbuk.childcare.go.kr>)공지 및 개별연락

○ 제출서류(※ 번호순으로 제출/①,②,⑧은 본 센터 양식<첨부파일>에 작성요망)

- ① 응시원서
- ② 자기소개서
- ③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/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)
-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-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-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
- ⑦ 기본증명서 1부(※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요망)
- ⑧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동의서

○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

- ① 접수기간 : 2024. 04. 01.(월) ~ 2024. 04. 11.(목) 12:00(시간접수)
- ②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메일 접수 중 택1
- ③ 접수처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. 뽕띠칸타빌 239호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
cbeducare@cbeducare.or.kr
- ④ 문의처 :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☎ 043-231-8769)

3.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
○ 보수기준

- ① 2024년 일반직 공무원 8급 0호봉(경력에 따라 호봉 산정 변동) 및 수당
- ② 4대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, 퇴직금 적용

○ 채용형태

① 계약직 : 총 1명 (채용시 ~ 2024. 12. 31 :추후 재 계약 가능)

○ 근로조건

- ① 근무장소 :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(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, 2층 239호)
- ②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 (월~금요일 / 09:00~18:00)
- ③ 복리후생 :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

○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.

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- 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-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8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.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2.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
- 3.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유의사항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(면접)목적 달성 후 문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예정이며 단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구직자(채용확정된 자 제외)가 요청할 시 채용서류는 본인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